

12/15

서울고등법원

제 7 행정부

판 결



사 건 2017누7589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서울 종로구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

피고, 항소인 국회사무총장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7. 9. 8. 선고 2015구합66493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1. 30.

판 결 선 고 2017. 12.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8.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다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성원

윤 성 원



판사 박순영 
판사 이정환 

별지

목 록

2011, 2012, 2013 회계연도 국회 일반회계의 4개 세항(1031세항 의정지원, 1032세항 위원회운영지원, 1033세항 의회외교, 1035세항 예비금) 각각의 특수활동비(230목)에 대한 지출결의서(계좌정보 및 계좌실명번호는 제외). 끝.

정본입니다.

2017. 12. 14.

서울고등법원

법원사무관 이종선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심법원인 이 법원(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 71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